

전기안전관리법 요약정리

(1)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 등

①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안전관리	안전관리자 자격기준	안전관리보조원인력
모든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	전기·안전관리(전기안전) 분야 기술사 자격소지자, 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용량 1만 킬로와트 이상은 전기 분야 2명
전압 10만 볼트 미만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	전기산업기사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사람	용량 5천 킬로와트 이상 1만 킬로와트 미만은 전기 분야 1명
전압 10만 볼트 미만으로서 전기설비용량 2천 킬로와트 미만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	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자격취득 이후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사람 또는 전기산업기사 자격 취득 이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규정없음
전압 10만 볼트 미만으로서 전기설비용량 1,500킬로와트 미만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	전기산업기사 이상 자격소지자	규정없음

②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및 해임신고

㉠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해임 신고를 하려는 자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선임 또는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설립된 전력기술인단체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단체(이하 “전력기술인단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 선임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

㉢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의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재직증명서와 실무경력증명서(해당자만 제출한다) 또는 그 증명서류

㉤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졸업증명서 또는 교육이수증

㉥ 전기안전관리위탁계약서 사본(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 받은 자만 제출한다)

㉦ 해임하는 경우에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 지정서 사본(후임자의 선임 없이 해임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해임 신고를 하려는 자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에 전기안전관리대행계약서 사본(선임신고외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선임 또는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력기술인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 ㉔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는 소속 기술인력이 담당하는 전기설비가 변경된 경우에는 기술인력별 전기설비담당 현황을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력기술인단체에 통보해야 한다.
- ㉕ 전력기술인단체는 ㉑ 또는 ㉒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신고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하면 지체 없이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신고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2) 전기안전관리자의 전기안전교육

① 교육의 과정·대상 및 기간

교육과정	교육대상자	교육기간
전기안전관리 기술교육(Ⅰ)	선임기간이 5년 미만인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관리보조원	3년마다 1회 이상
전기안전관리 기술교육(Ⅱ)	선임기간이 5년 이상인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관리보조원	
전기안전관리특별 교육	처음 선임된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관리보조원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② 교육과목

- ㉑ 전기안전 관련 소양교육
- ㉒ 전기 관계 법령 및 전력산업정책
- ㉓ 전기안전관리 현장 실무·실습
- ㉔ 전기안전관리 운영 관련 규정
- ㉕ 전력계통 특성 및 사고 예방
- ㉖ 전기재해 예방 및 위기 대응 실무사례
- ㉗ 신기술 및 에너지 관리기술

③ 행정사항

- ㉑ 교육기관은 매년 12월 말까지 교육의 종류별·대상자별 및 지역별로 다음 해의 교육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㉒ 교육기관은 교육신청이 있을 때에는 교육 실시 10일 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교육장소와 교육날짜를 통보해야 한다.

④ 그 밖의 사항

- ㉑ 교육과목별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의 수준은 교육기관이 정한다.
- ㉒ 교육과정별 1회 교육은 각각 21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교육과목 중 일부 과목은 온라인교육을 병행할 수 있다.
- ㉓ 전기안전관리특별교육 대상자는 전기안전관리 현장 실무·실습 과목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 ㉔ 전기안전관리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 전기안전관리 특별교육을 전기안전관리기술교육(Ⅱ)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규모

① 한국전기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둘 이상의 전기설비 용량의 합계가 4천 500킬로와트 미만 경우로 한정한다)

- ㉠ 용량 1천킬로와트 미만의 전기수용설비
 - ㉡ 용량 300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설비. 다만,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경우에는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으로 한다.
 - ㉢ 용량 1천킬로와트(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을 갖춘 경우 용량 3천킬로와트) 미만의 태양광발전설비
- ② 개인대행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둘 이상의 용량의 합계가 1천 550킬로와트 미만인 전기설비로 한정한다)
- ㉠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의 전기수용설비
 - ㉡ 용량 150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설비. 다만,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경우에는 용량 300킬로와트 미만으로 한다.
 - ㉢ 용량 250킬로와트(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을 갖춘 경우 용량 750킬로와트) 미만의 태양광발전설비

(4)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범위는 다음과 같다.

- ①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업무 및 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교육
- ②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점검 및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
- ③ 전기설비의 운전·조작 또는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
- ④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의 작성·보존
- ⑤ 공사계획의 인가신청 또는 신고에 필요한 서류의 검토
- 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감리 업무
 - ㉠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설치·변경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억원 미만인 공사
 - ㉡ 전기수용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천만원 미만인 공사
- ⑦ 전기설비의 일상점검·정기점검·정밀점검의 절차, 방법 및 기준에 관한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 ⑧ 전기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응급조치

(5) 자가용 전기설비의 점검 등

- ①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전기설비 중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에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 ② 일반용 전기설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의 전기설비로서 한정된 구역에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 ③ 자가용 전기설비: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및 일반용 전기설비 외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6) 자가용 전기설비의 점검 등

①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 ㉠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 ㉠에 따라 인가를 받아야 하는 공사 외의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자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 ㉡ 전단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저압(低壓)에 해당하는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의 경우에는 사용전검사(使用前檢査) 신청으로 공사계획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 ㉣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가 사고·재해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멸실·파손되거나 전시·사변 등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 및 ㉡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시작한 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용 전 검사

- ㉠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검사에 합격한 후에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검사에 불합격한 경우에도 안전상 지장이 없고 자가용전기설비의 임시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사용 기간 및 방법을 정하여 그 설비를 임시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그 사용 기간 및 방법을 정하여 통지를 하여야 한다.
- ㉢ 비상용 예비발전기가 완공되지 아니할 경우 등 ㉡에 따른 전기설비 임시사용의 허용기준, 1년의 범위에서의 사용기간, 전기설비의 임시사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③ 정기검사

- ㉠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전기설비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 ㉡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고압 이상의 수전설비 및 75킬로와트 이상의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에 대하여 3년마다 2월 전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 ㉢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정기검사신청서에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7일 전까지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정기검사를 한 경우에는 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검사확인증을 검사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검사결과 불합격인 경우에는 그 내용·사유 및 재검사 기한을 통지하여야 한다.
- ㉤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기검사결과 불합격인 경우 적합하지 아

니한 부분에 대하여 검사완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전기설비 검사자의 자격

사용 전 검사 및 정기검사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전기안전)·토목·기계 분야의 기술 자격을 가진 사람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수행해야 한다.

- ㉠ 해당 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 해당 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그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해당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그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 일반용 전기설비의 사용 전 점검 등

① 일반용전기설비는 다음에 해당하는 전기설비로 한다.

- ㉠ 저압에 해당하는 용량 75킬로와트에서 그 전기를 사용하기 위한 전기설비
- ㉡ 저압에 해당하는 용량 10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설비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일반용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기설비의 사용 전과 사용 중에 정기적으로 안전공사 또는 전기판매사업자로 하여금 점검(전기판매사업자는 사용 전 점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설비의 경우에 한정한다)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거용 시설물에 설치된 일반용전기설비를 정기적으로 점검(이하 “정기점검”이라 한다)하는 경우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점검의 승낙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용 전 점검

- ㉠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 전 점검은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완료된 후 전기를 공급받기 전에 받아야 한다.
- ㉡ 사용 전 점검을 받으려는 자는 전기사용계약별로 사용 전 점검 신청서에 전기사업법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점검을 받으려는 날의 3일 전까지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정기점검

- ㉠ 일반용 전기설비의 정기점검을 사용 전 점검 또는 정기점검을 한 후 공동주택에 설치된 전기설비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후 2개월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 ㉡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정기점검 결과 부적합한 시설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8) 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의 시설에 설치된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라 한다)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 ㉠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세대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점포

② 안전공사는 ①의 시설에 설치된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다음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달의 전후 2개월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 ㉢ 공동주택의 세대: 사용전검사를 한 후 25년이 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그 안전점검을 한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날
- ㉣ 전통시장 점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인정서가 발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그 안전점검을 한 날부터 매 1년이 되는 날

③ 안전공사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세대 및 전통시장 점포의 안전점검을 위하여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동주택 및 전통시장의 설치장소, 공급전압, 계약전력 등 전기를 공급받는 자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③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을 받은 전기판매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안전공사에 제공해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사항(2021년 9월 11일 시행)

1.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등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되는 공동주택(이하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이라 한다)의 관리인(「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을 말하며, 관리단이 관리를 개시하기 전인 경우에는 공동주택을 관리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다. 이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인이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②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관리규약의 제정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5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 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할 것을 결정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해당 공동주택을 의무관리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직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제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시장·군수·구청장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2. 관리의 이관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에는 입주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통지하고 해당 공동주택을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등이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입주자등이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위탁관리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이를 사업주체 또는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에게 통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

지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3. 관리규약 등의 신고

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관리규약의 제정의 경우에는 사업주체 또는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이 관리규약의 제정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신고할 수 있다.

1. 관리규약의 제정·개정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변경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4. 과태료 규정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전환 및 제외,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변경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